

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선	기관위원장
람	

제1392호 2018. 10. 8(월)

차 례

고 시

-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36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----- 1
-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37호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----- 3

공 고
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416호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공고 ----- 5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421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(안)에 대한 주민
의견 수렴 ----- 6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425호 손실보상 재결신청에 따른 공고·열람 ----- 11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426호 보상계획열람공고 ----- 12

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8-136호

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,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·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8. 10. 8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- 부여·변경 도로명주소 : 인천 서구 백범로 776 외 15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부여(변경)사유	도 로 명 고 시 일	도 로 명 부 여 사유
		별 도 열 략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(☎560-4830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-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8.10.08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-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-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

고시일 : 2018-10-08

연번	지번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	비고
1	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64-66	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 776 (가좌동)	20090710	인천에서 옥고를 치르고 부두에서 노역을 한 바 있었던 임시정부 주석 김구의 호를 따 명명	
2	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64-65	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 780 (가좌동)	20090710	인천에서 옥고를 치르고 부두에서 노역을 한 바 있었던 임시정부 주석 김구의 호를 따 명명	
3	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64-34	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4 (가좌동)	20090922	가정동의 동명을 따. 가정동이란 명칭은 조선조 개국공신 조반이 말년에 이 곳에 와서 佳亭이란 정자를 세운 것에서 유래함.	
4	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761-4	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로 26 (경서동)	20090922	경서지구를 관통하여 경서지구의 지명을 따 경서로로 명명	
5	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51-3	인천광역시 서구 고산로 25 (원당동)	20081231	고산이라는 지명을 따 명명	
6	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51-5	인천광역시 서구 고산로 23 (원당동)	20081231	고산이라는 지명을 따 명명	
7	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51-6	인천광역시 서구 고산로 21 (원당동)	20081231	고산이라는 지명을 따 명명	
8	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85-1	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대로 132 (청라동)	20140804	청라국제도시 이미지 부각 및 큰시내를 이르는 말	
9	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205-15	인천광역시 서구 가현로92번길 4 (마전동)	20081231	가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10	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98-3	인천광역시 서구 신석로122번길 10 (석남동)	20090922	신석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,2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11	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57-4	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대로161번길 3-3 (청라동)	20140804	청라국제도시 이미지 부각 및 청라한대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,6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12	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71-23	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대로174번길 10-20 (청라동)	20101111	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,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	
13	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613-7	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498번안길 5-22 (가정동)	20150130	염곡로498번길에서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14	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97	인천광역시 서구 원석로196번길 34 (원창동)	20171025	원석로 시작지점부터 약 1,960m 지점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15	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3-232	인천광역시 서구 북향로193번길 113 (원창동)	20171025	북향로 시작지점부터 약 1,930m 지점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16	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205-14	인천광역시 서구 가현로82번길 5-7 (마전동)	20081231	가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
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8-137호

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

인천 서구 석남동 508-1번지 일원의 층영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『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』 제12조(사업시행계획인가)제2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8. 10. 5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층영가로주택정비사업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 - 가. 위 치 :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08-1번지 일원
 - 나. 면 적 : 2,732.70㎡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가. 법인의 명칭 : 층영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
 - 나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: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57 (석남동) 4층
 - 다.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: 조합장 이현남 (인천광역시 서구 신석로 71)
4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24개월
5. 사업시행계획인가일 : 2018년 10월 5일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: 해당사항 없음

7. 건축물의 대지면적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

대지면적(m ²)	2,732.70	건축면적(m ²)	1,899.96
건축연면적(m ²)	26,402.52	건폐율(%)	69.53
용적률(%)	634.07	건축물의 높이(m)	43.93
건축물 용도	복합건축물 (아파트, 오피스텔, 근린생활시설)	규모	지하4층/지상 14층 (복합건축물 1개동)

8.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 계획

공동주택	구분	세대수 (아파트)	주택규모별 세대수(전용면적 기준)			
			35.50m ²	44.51m ²	49.76m ²	52.36m ²
	계	180	10	50	80	40
	분양	180	10	50	80	40
	임대	-	-	-	-	-

업무시설	구분	호수 (오피스텔)	주택규모별 세대수(전용면적 기준)			
			48.05m ²	59.74m ²	63.96m ²	65.89m ²
	계	50	2	14	23	11
	분양	50	2	14	23	11
	임대	-	-	-	-	-

근린생활시설	구분	세대수 (아파트)	주택규모별 세대수(전용면적 기준)			
			710.02m ²	644.14m ²	134.60m ²	39.35m ²
	계	4	1	1	1	1
	분양	4	1	1	1	1
	임대	-	-	-	-	-

9.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-1416호

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공고

지방회계법 제38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금고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.

2018. 10. 8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약정기간 : 2019. 1. 1. ~ 2022. 12. 31. (4년)
2. 인천광역시 서구금고 지정
 - 주식회사하나은행 [대표이사 함영주]
3. 취급회계
 - 일반회계, 특별회계, 각종 기금
4. 구금고의 주요업무
 - 각종 세입금의 수납과 보관 및 세출금의 지급
 - 세입·세출외 현금 등 각종 잡종금의 수납 및 지급
 - 일상경비 등 배정자금 및 유가증권, 수입증지의 출납 및 보관
 - 기타 금고 업무의 취급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인천광역시 서구가 지정한 업무

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-1421호

인천광역시 서구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(안)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

『도로명주소법』 제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,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685번1길, 원당대로685번2길, 원당대로685번3길, 원당대로685번4길, 원당대로685번5길, 원당대로820번1길, 원당대로820번2길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(안)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8. 10. 8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공고 및 의견수렴기간 : 2018. 10. 8. ~ 2018. 10. 21.(14일간)
2. 공고내용 : 별첨 조서 참조
3. 관계서류 및 열람장소
 - 관계서류 : 해당 도로구간/도로명 조서 및 도면
 - 열람방법 : 서구청 토지정보과, 해당지역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열람가능
인천광역시 서구 홈페이지열람(<http://www.seo.incheon.kr/>)
4. 의견 제출방법

【별첨】 조서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 【붙임】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·팩스·우편 등의 방법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- 제출하는 곳 : 인천광역시 서구 토지정보과
 - 방문 : 서구청 토지정보과, 원당동·당하동 행정복지센터
 - 전화 : 서구청 토지정보과 새주소팀(☎560-4832)
 - 팩스 : 서구청 토지정보과 (☎560-2786)
 - 우편 :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, 11층 토지정보과 새주소팀(22726)
5. 도로명 확정 : 의견수렴 후 30일 이내에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주소사용자 과반수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 고시함으로써 도로명이 확정됩니다.

도로명(구간) 변경 의견서				
성명 및 단체		연락처	일반전화	
			휴대전화	
주 소				
연번 및 변경(안)도로명	연번		변경(안)도로명	
신청(의견)구간 /변경(안)도로명				
변경(안)도로명에 대한 의견				
<p>변경(안)도로명/구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.</p> <p>2018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신청인 (서명 또는 날인)</p> <p>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</p>				
※ 내용이 많을 경우, 별지 사용도 가능합니다.				

도로명주소 국민불편 개선을 위한 '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(안)' 에 따른 주민의견을 받습니다.

도로명 주소에 대한 주요 국민불편사항 중 숫자분리 도로명을 도로구간 및 도로명을 변경하고자 주민의견을 받습니다.



위치 : 원당대로685번1길, 원당대로685번2길, 원당대로685번3길.
원당대로685번4길, 원당대로685번5길

의견제출기간 : 2018년 10월 8일 ~ 10월 21일

참여방법

○ 우편 및 방문 :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, 11층 토지정보과 새주소팀

○ 전화 : 032-560-4833, 팩스 : 032-560-2786

○ 이메일 : ic260013@korea.kr

문의처 : 서구청 토지정보과 새주소팀 (☎032-560-4832)

도로명주소 국민불편 개선을 위한 ‘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(안)’ 에 따른 주민의견을 받습니다.

도로명 주소에 대한 주요 국민불편사항 중 숫자분리 도로명을 도로구간 및 도로명을 변경하고자 주민의견을 받습니다.



- 위치 : 원당대로820번1길, 원당대로820번2길
- 의견제출기간 : 2018년 10월 8일 ~ 10월 21일
- 참여방법
 - 우편 및 방문 :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, 11층 토지정보과 새주소팀
 - 전화 : 032-560-4832, 팩스 : 032-560-2786
 - 이메일 : ic260013@korea.kr
- 문의처 : 서구청 토지정보과 새주소팀 (☎032-560-4832)

숫자분리도로명 변경 도로명 제안 목록

연번	현재 도로명	구 제안 도로명	사유
1	원당대로685번1길	청마골1길	청마골이라는 옛 지명을 반영한 첫 번째 도로
2	원당대로685번2길		
3	원당대로685번3길	청마골2길	청마골이라는 옛 지명을 반영한 두 번째 도로
4	원당대로685번4길	청마골3길	청마골이라는 옛 지명을 반영한 세 번째 도로
5	원당대로685번5길	청마골4길	청마골이라는 옛 지명을 반영한 네 번째 도로
6	원당대로820번1길	원당초1길	원당초 북쪽에 위치한 첫 번째 도로
7	원당대로820번2길	원당초2길	원당초 남쪽에 위치한 두 번째 도로



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-1425호

손실보상 재결신청에 따른 공고 · 열람

인천식품단지개발(주)에서 시행하는 「I-Food Park 조성사업」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의 손실보상 재결신청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. 10. 8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사 업 명: I-Food Park 조성사업
2. 사업위치: 인천시 서구 금곡동 457번지 일원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【성명】 인천식품단지개발(주)
【주소】 인천 서구 봉화로 108번길 17-2(오류동)
4. 사업기간: 2018.6.5. ~ 2018.12.31.
5. 손실보상 재결신청 대상 물건 등 소유자 및 관계인: “별첨”
6. 공고 및 열람기간: 2018.10.8. ~ 2018.10.22. (14일)
7. 열람장소 및 의견서 제출처: 서구청 도시개발과(☎ 032-560-5772)
8. 기타: 소유자 및 관계인 등은 공고 및 열람 사항에 의견이 있을 시에는 공고기간 내에 우리 구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-1426호

보 상 계 획 열 람 공 고

인천광역시서구에서 시행하는 「석남산업단지 진입 도로개설공사(소1-18호선)」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,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8. 10. 08.

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1. 사업의 개요

- 사업시행지의 위치 :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-526번지 일원
- 사업의 종류 및 명칭
 - 종류 : 도시계획시설(도로 : 소1-18호선)
 - 명칭 : 석남산업단지 진입 도로개설공사(소1-18호선)
- 사업의 규모 : L=196m, B=10m

사 업 명	사업기간	사 업 시 행 지	사업규모	사업시행자
석남산업단지 진입 도로개설공사(소1-18호선)	2015.10.~ 2018.12.	인천 서구 석남동 223-526번지 일원	L= 196m B= 10m	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2. 사업의 근거

- 도시계획시설(도로)결정 : 인천직할시고시 제1406호(1988.12.02.)
- 실시계획인가고시 :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-152호(2015. 10. 05.)
- 실시계획(변경)인가고시 :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7-23호(2017. 03. 06.)

3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, 지번,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: 붙임과 같음
4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, 성명 : 붙임과 같음
5. 보상계획열람(이의신청)기간 및 장소
 - 열람공고(이의신청)기간 : 2018. 10. 08. ~ 2018. 10. 23. (15일간)
 - 열람장소 : 인천광역시 서구청 건설과 건설행정팀(☎560-4485)
 - 이의신청 방법 : 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.
6. 보상방법 및 절차
 - 보상시기 : 2018. 11~12월중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.
 - 보상절차
 - ▷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→ 토지 등의 감정평가 → 손실보상협의 →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 지급
 - ▷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 - ▷ 보상금은 당사자와 보상협의를 성립된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개인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.
 - 보상금 산정
 - ▷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3인(시장과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장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

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)을 선정하여 평가의
 되고,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보상금을 산정합니다.

▷ 감정평가업자 추천
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68조
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상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
 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
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
 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
 있습니다.

기간 내 추천이 없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2인의 감정평가업자에게
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할 예정입니다.

-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세부물건조서를 개별통지
 하고 주소나 거주지 불명 등의 사유로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본
 공고로 대신합니다.
- 기타 사업추진에 따라 보상일정 및 열람내용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
 으며, 조서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물
 건 또는 사실과 같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합
 니다.